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10.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조직 및 인력요건 완화(안 별표 3, 별표 5)
- 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5)
- 다. 기타 인용조항 명확화(안 별표 12)
-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 21)
-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14, 별표20, 별표21, 별표32)
- 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6호 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 불입(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 제1호가목2) 중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을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2) 가),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인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별표 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5 제1호가목2) 중 “농산물우수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를 “농산물우수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가),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인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

별표 5 제2호나목1)의 수처리설비 가)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를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2)의 작업장 중 라),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내벽은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내수성(耐水性)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지 않도록 위생·청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돌출부위(H빔 등)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마)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업장의 천장은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지 않도록 위생·청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돌출부위(H빔, 배관 등)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나목2)의 수처리설비 중 가)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를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2 제2호나목 1), 2),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는다.
- 2) 품목(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
- 5) 생산연도: 쌀과 현미만 해당하며,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표시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20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21 제1호나목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를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앞쪽 처리기간란에 “(갱신 2개월)” 문구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신설> 다. (생략) 라. (생략)	[별표 2]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u> <u>라. (현행 다목과 같음)</u> <u>마. (현행 라목과 같음)</u>
[별표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생략)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	[별표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 가. -- 1) (현행과 같음) 2)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인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
다)~마) (생략)	다)~마) (현행과 같음)
2. 시설	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시설	1) -----
수 가) 곡물의 세척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	수 가) -----
리	리 -----

설비	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설비,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설비	----- ----- -----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2) ----- ----- -----	
시설기준	시설기준	시설기준	시설기준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내벽은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내수성(耐水性)으로 설치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라) ----- 하며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내수성(耐水性)으로 설치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지 않도록 위생청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돌출부위(H빔 등)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라) ----- 하며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의 천장은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라) ----- 하며,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의 천장은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지 않도록 위생·청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돌출부위(H빔, 배관 등)를
작업장	마)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의 천장은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	마) ----- ----- ----- ----- -----하며,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인 경우에는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만,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의 천장은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지 않도록 위생·청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돌출부위(H빔, 배관 등)를

수 처 리 설 비 가)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 설비,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가) ----- ----- ----- ----- -----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	[별표 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음 차수로 한다. <단서 신설> [별표 1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2. 표시사항 나. 표시항목 1)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u>시·군·구 단위까지</u> 적음 2) 품목(품종): 「<u>종자산업법</u>」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3)~4) (생 략) 5) 생산연도: <u>쌀만 해당한다.</u> 6)~7) (생 략)	----- .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2. 표시사항 나. 표시항목 1)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u>시·도명이나 시·군·구명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는다.</u> 2) 품목(품종): 「<u>식품신품종보호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 3)~4) (현행과 같음) 5) 생산연도: <u>쌀·현미만 해당하며,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표시한다.</u> 6)~7) (현행과 같음)
[별표 1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 략)	[별표 1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다. (생 략) [별표 20]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나. (생 략) <u><신 설></u>	<u>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u> <u>라. (현행 다목과 같음)</u> [별표 20]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u>		다. (생 략) [별표 21]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u>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u>다.<신 설></u> 다. (생 략)	<u>라. (현행 다목과 같음)</u> [별표 21]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u>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u>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u> <u>라. (현행 다목과 같음)</u>
---	---	--	--	---

[별표 3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다. (생략)

라. <신설>

라. (생략)

[별지 6호 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간 3개월
신청 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 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별표 3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
간 내에 과태료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
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
하지 않는다.

마. (현행 라목과 같음)

[별지 6호 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간 3개월 (갱신 2개월)
신청 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 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연월일
설립 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 수행 여부		[] 여 [] 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 인 (대표 자) 첨부 서류 (지정 신청 시)	1. 정관 1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0만원 (뒤쪽에 수입 인지 불임)
	1. 지정서 2.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 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 근거		설립 연월일
설립 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 수행 여부		[] 여 [] 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 인 (대표 자) 첨부 서류 (갱신 신청 시)	1. 정관 1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0만원 (뒤쪽에 수입 인지 불임)
	1. 지정서 2.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 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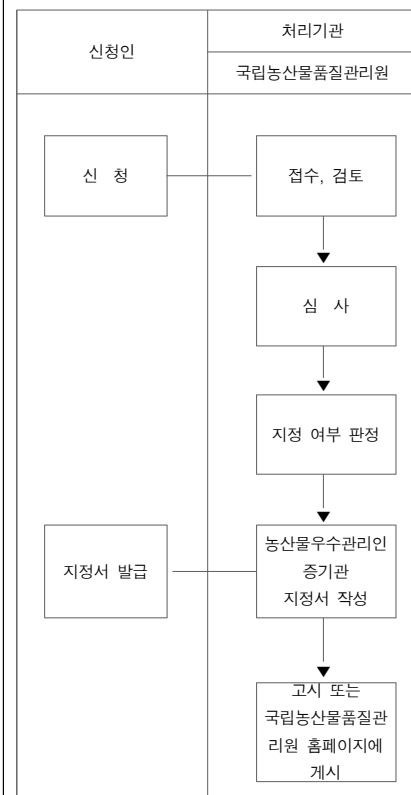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